#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57

발의연월일: 2024. 10. 11.

발 의 자:김병기·김종민·한준호

송옥주・이정문・윤종군

박상혁・김 윤・정성호

이개호 • 문진석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,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,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 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 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,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포함 여부가 임의적이고,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승진 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군 복무기간이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그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, 제대군인이 최초로 승진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소근무

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를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3항 단서 및 제5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공공기관은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한다.

⑤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을 최초로 승진임용하는 때에 그제대군인의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여야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6조(채용 시 우대 등) ①・② 제16조(채용 시 우대 등) ①・②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③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 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 대군인의 군 또는 공익 분야에 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-----. 다만, 취 포함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 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, 지방 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6 조까지에 따라 지정 · 고시된 공 공기관은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하다. ④ (생략) ④ (현행과 같음) ⑤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, <신 설>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・고시 된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

용된 제대군인을 최초로 승진 임용하는 때에 그 제대군인의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계급 별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.